

지방세에서 신용카드납세제도의 발전방안

홍 기 용

인천대학교 교수

I. 서 론

현대는 일반거래이든 상거래이든 대부분 신용거래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현대에서는 신용거래가 기본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시대에서 신용거래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 혹은 용역의 거래에 대한 자금결제 뿐만 아니라 기타 전기료, 세금 등의 대금납부의 경우에도 신용거래로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된다. 인터넷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사회의 기간이 되는 장년층이 되는 시대에는 대부분의 자금거래가 신용거래로 바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기 위해서

도 세금징수행정에서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에, 납부수단이 현금 이외의 것으로 바뀔 것을 가정하여 이에 따른 징수비용 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주도하에 신용카드의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정책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세법에 의거 사용자에게는 세금을 감면시키거나 추첨에 의한 상금을 주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을 확대해 왔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의 확대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진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의 경우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는 정부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시대에 필

수적인 신용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발전방안을 연구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어떠한 논쟁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함에 있어 가맹점방식을 중심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표 1> 2001년도 가맹점 및 카드론 방식 납부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시도	가맹점 방식			카드론 방식		
	시군구수	건수	세액	시군구수	건수	세액
계	68	568,963	116,738,043	57	11,461	2,315,899
서울	-	-	-	25	8,024	1,466,535
부산	-	-	-	-	-	-
대구	-	-	-	8	164	16,964
인천	-	8,797	2,079,491	8	1,634	570,624
광주	-	-	-	5	563	38,450
대전	-	-	-	-	-	-
울산	5	24,961	3,604,000	-	-	-
경기	20	230,513	62,117,000	3	165	71,000
강원	16	104,615	18,567,111	1	6	920
충북	3	6,574	1,789,094	-	-	-
충남	5	68,541	12,808,561	2	289	57,717
전북	7	12,448	1,617,593	-	-	-
전남	7	6,291	888,141	-	-	-
경북	1	7,807	919,424	-	-	-
경남	-	-	-	5	616	93,689
제주	4	98,416	12,347,628	-	-	-

※ 시군구 수는 2002. 2월 기준이며 인천 서구, 부평구(가맹점 방식)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음

<출처 : 행정자치부>

<표 2> 연도별 신용카드 납부실태

(단위 : 건, 억원)

구 분	시행 시군구수	건 수	납부금액	수수료 지급액
1999	33	29,051	189	3.7
2000	61	563,235	509	10
2001	68	568,963	1,167	23

<출처 : 행정자치부>

II.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 현황 및 방법

1. 국내현황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에 의해 세금납부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의하면 [표 1]과 같이 2001년도의 가맹점방식에 의한 지방세의 징수를 허용하는 시군구는 68개이고, 카드로방식의 경우 57개로서 총 125개의 시군구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맹점방식에 의한 신용카드의 지방세징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가. 가맹점방식

신용카드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서는 가맹점방식과 카드로방식이 있다. 가맹점방식은 통상의 신용카드거래와 동일한 것으로서, 과세권자가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납세자로부터 신용카

드를 확인한 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세금을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국세의 경우 수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점방식에 의한 방법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 가맹점방식이 1997년에 의정부시에서부터 처음으로 시작되어 2001년말 현재 전체 시군구 248개중 28%인 68개 시군구에서 직접 수수료(납부액의 1.5%~2%)를 납부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서울 및 광역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다만, 울산은 시행).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의하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매년 가맹점방식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에는 이 방법을 채택한 총 68개 시군구의 납부건수는 568,963건이고 납부금액은 1,16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부담은 23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맹점 방식을 도입한 전체 68개 시군구 중 전체세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군구는 의정부시 등 26개 시군구이며, 일부세목에 대해 운영하는 시군구는 복제주군 등

<표 3> 도입세목별 운영현황 및 사례

구분 \ 기관		의정부시	북제주군	전주시	울산 남구
도입시기		'97. 3	'97. 4	'98. 12	'99. 8
해당세목		전세목	신고납부세목 제외	자동차세	채납세
신용카드사		BC	BC, LG, 국민, 현대(구 다이너스), 외환, 삼성	국민, 전북(비자)	BC, LG, 국민, 외환, 삼성, 현대, 동양
수수료율		2%	현대카드1.5% 그 외 2%	2%	2%
2001 실적	건수 (건)	48,639	8,642	3,440	7,262
	세액 (천원)	4,133,265	1,137,264	646,368	1,410,733

<출처> 행정자치부

23개 시군구이며, 채납세에 한하여 운영하는 시군구는 울산 남구 등 19개 시군구이다. 또한 [표 3]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허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도 다르며, 일부의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신용카드를 가맹점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징수비가 많이 든다는 면에서 가맹점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취지에서 2001년 8월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방식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가맹점방식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검토하면서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어

2001년 8월에 재정경제부와 수수료부담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에서도 현재 세금납부를 위한 수수료율 1.5%~2%은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최소 처리비용 2.5~2.8%보다도 더욱 낮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인하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카드로론방식

카드로론방식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납세자가 장단기 신용대출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카드로론방식의 경우 아무런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추가적인 징수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점때문에 각 지방자

<표 4> 가맹점방식과 카드론 방식의 비교 및 카드론 운영사례

구 분	가맹점 방식	카드론 방식
특 징	카드전표 발행 방식	장·단기 신용대출
수 수 료	1.5~2%	없음(단, 대출이용자가 대출 이자 부담)
처리매체	이지체크, 카드전표 발행 등 수동처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 이체
처리절차	고지서 발송 → 납세자가 수납처(동 사무소, 은행 등) 방문 → 수납처에 서 신용 카드조회·승인·전표발행 → 대금청구	고지서 발송 → 납세자가 카드사 홈페이지 방문 → 신용 조회·승인(전자이체) → 대금청구
당사자별 이해관계	자치단체 : 수수료 부담 카드사 : 수수료 수입	납세자 : 자금유통, 대출이자부담 카드사 : 대출이자수입
시행시군구 및 2001년도실적	68개 시군구 568,963건, 1,167억원	57개 시군구 11,461건, 23억원

<출처> 행정자치부

치단체에서는 카드론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2001년 현재 57개 시군구에서 카드론방식에 의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는 높은 이자부담으로 카드론방식에 의한 납부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일보, 2001.9.6).

카드론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는 등록세를 제외한 전세목을 대상으로 2000년 4월부터 도입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신용카드회사인 LG캐피탈 (금고업무 일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대행계약 체결)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용대출을 하는 방법으로서 LG카드 및 타사카드소지자와 카드미소지자를 막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이자

당연히 납세가 대출금액, 기간, 신용도에 따라 연 16~23%로 차등하여 부담한다. 이 방법은 처음 도입한 첫해인 2000년에는 809건에 1억 2천만원이었고, 다음해인 2001년에는 8,024건에 15억으로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인터넷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카드론방식 이외도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각 구청에 설치된 카드조회기를 통하여 신용대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방식을 2002년 3월 1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방법에서는 오로지 LG카드소지자만이 카드조회기를 통해 신용대출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자

는 납세자가 연 11~17%(다만 1개월 일시불의 경우 0.916%)로 부담하여야 한다.

2. 국외

외국에서도 신용카드를 가맹점방식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세 및 일부 지방세에 대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세는 미국 국세청이 사적 부문과 업무협력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신용카드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적대행회사로는 Official Payments Corporation(<http://www.officialpayments.com>), Phone Charge, Inc.(PCI)(<http://www.about1888alltaxx.com>), MasterCard International(<http://www.mastercard.com/cardholderservices/taxpayment>), American Express(<http://www.AmericanExpress.com>), Discover® Card (<http://www.discovercard.com>) 등 5개가 있다 (미국국세청홈페이지 http://www.irs.gov/elec_svs/partners.html).

이들은 국세 이외에 지방세의 경우에도 업무협력을 받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대행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7년 Taxpayer Relief Act에 의하여 재무성은 연방세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동법에서는 국세청이 사적대행회사에게 어떠한 배려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용카드에 의해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적대행회사와 금전교환없는(Non-monetary) 계약 혹은 동의만 할 뿐이다.

이 사적대행회사는 일반 상인처럼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거래처리에서 중개역할을 하기도 하고, 신용카드회사가 직접 사적 대행회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적대행회사는 신용카드번호와 만기일을 확인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인증을 얻어 지불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납세자에게 확인번호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적대행회사는 납세자계정의 전기(posting)를 위해 국세청에 납세정보를 보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납세자에게 허용하고 있으며, 둘째,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승인한 사적대행회사에서 징수한다. 셋째, 사적대행회사는 납세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으며, 국세청은 오로지 세금액만 받는다. 사적대행회사가 받는 수수료는 그들의 행정처리비용을 의미하며, 국세청은 어떠한 수수료도 사적대행회사로부터 받지 않는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할 때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Official Payments Corporation의 경우에는 납세자는 세금의 2.5%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이 40달러 이하 등 소액의 경우에는 무조건 건당 1달러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넷째, 납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세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섯째, 세금의 납부일은 신용카드의

납부승인된 날이 된다. 여섯째, 세금을 2회로 나누어 일부납부도 허용되며, 일부 세금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곱째, 세금신고서는 사적대행회사 혹은 신고서작성소프트웨어에 의하여 별도로 하여야 한다. 여덟째,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납부는 취소되지 않는다. 아홉째, 경우에 따라 사적대행회사가 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세금, 가산세 및 가산금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열째, 자진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경우 과오납금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이 경우 과오납금은 다른 세금에 충당될 수도 있다. 열한번째, 납세자의 정보는 거래승인을 위한 처리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출처 : <http://www.irs.gov/efile/display/0,,i1%3D51%26genericId%3D10079,00.html#Credit>)

III. 신용카드납부제도의 논쟁점

가맹점방식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논쟁점은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과세권자는 세금체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면에서 적극적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과세권자는 반기는 입장은 아니다. 이에 반하여 납세자는 수수료를 과세권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의 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듯이, 세금납부의 경우에도 과세권자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징수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결국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의 주요 논쟁점은 수수료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

가. 과세권자의 입장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납세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세금체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납부제의 도입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권자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가맹점방식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납세자간 형평성의 논란과 수수료의 부담에 의한 징수비의 증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납세자간 형평성의 논란과 관련하여 과세권자는 납세자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든 신용카드로 납부하든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기간의 이익, 즉 신용카드사용일과 결제일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만큼 유리하므로, 이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납부자는 대금결제기간까지 자기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으므로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통산 26일에서 53일의 기간)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분납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로, 세금을 가맹점방식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맹점, 즉 과세권자의 수수료부담은 징수비의 증대를 야기하여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 수수료는 종국적으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부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현금납부를 기피할 수 있으며 납세자간 형평성의 논란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납세자의 입장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의 추가 부담없다면 세금을 신용카드 납부하기를 바란다. 납세자는 세금을 신용카드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인터넷시대에 은행이나 과세권자를 방문하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기간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도 일반상거래와 같은 개념과 같다고 보며, 또한 징수비는 당연히 과세권자가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일반상거래는 반대급부 있는 대가지불인데 반하여, 세금은 반대급부 없는 재정수요충당이라는 점이 다르다.

첫째, 세금납부를 신용카드 납부하는 것은 일반상거래에서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대신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일반상거래에서는 특정

의 계약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금의 경우에는 특정의 계약없이 법률로 정한 납세의무에 의하여 반대급부없이 성립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상거래나 세금납부에서 발생하는 지불수단의 선택, 즉 현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신용카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소비자 혹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상거래에서도 대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징수의 경우에도 징수비는 당연히 부담되게 마련이다. 이 점에서 현금으로 세금을 수납하는 경우를 가정하며 규정된 징수비의 범위 안에서만 사고한 나머지, 인터넷시대 등을 대비하여 신용카드 등 여러 유형의 지불수단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과세권자 중심의 사고라고 보는 것이다.

2. 수수료부담의 귀속결정에 대한 논거와 그 비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논쟁점에 대해 각 당사자간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수수료부담을 과세권자 혹은 납세자 중 누가 할 것인가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아래에서는 수수료부담에 대한 주요 논거로 대두되고 있는 납세자간 형평성의 논란과 세수감수에 대해 각 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비판하도록 한다.

가. 납세자간 형평성

과세권자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용하는 결제수단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게 수수료부담을 지우지 않고 과세권자가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간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비판적 시각에서 논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 결제수단의 선택은 납세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이를 막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논거이다. 일반상거래에서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신용카드로 내는 이유는 기간의 이익 등이 있기 때문이지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현금을 선호하거나 미래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 등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상거래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소비자가 선택하는 지불수단을 판매자가 선택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세금납부의 경우에도 과세권자는 세금의 징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강제로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자에게 하등의 불평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지불수단의 선택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수료의 부담은 징수비로서 당연히 과세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거이다. 일반상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경우 사업자가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과세권자가 세금을 받는 경우 수수료를 과세권자의 징수비로 보지 않고 납세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신용카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결제수단을 현금 이외에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려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현금이라는 결제수단에서는 지폐 혹은 동전을 발행하고 유지하고 폐지하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현금으로 모든 결제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도입된 것이 신용카드인데, 이는 전적으로 민간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유지하고, 폐지하는 모든 비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제수단 중 현금과 신용카드를 바라다보는 견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과 현금으로 결제하려는 납세자간에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지불수단에 의해 현금납세자가 신용카드납세

자에 비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하면 신용카드의 이용을 반대하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다. 만약 현금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을 잃는다는 논리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시대에서 신용거래의 진전을 막을 수 없다.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좋은 결제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이다. 신용카드의 이용은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각종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민간에서는 수수료를 사업자에 부담하게 하면서, 국가는 세금이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무작정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현금중심의 오프라인(off line)시대를 벗어나 온라인(on line)시대에 맞는 세정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나. 세수감소

과세권자의 입장은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과세권자가 부담하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수수료가 세금을 징수하는 하나의 징수비라고 생각한다면 그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징

수비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과연 장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실증연구를 한 것이 없어 단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상거래에서 지불수단으로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판매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이 없어도 곧바로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라는 제도로 인하여 충동구매 등 다양한 판매증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세금의 경우에도 세금채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국민 혹은 주민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원활히 징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전기료를 신용카드로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점은 우리가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준다는 것은 단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세금을 현금으로 잘 징수되는 것이겠지만, 이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만 고려된 사고라고 지적할 수 있다.

V. 신용카드납부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1. 기본방향

세금을 가맹점방식에 의한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 몇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세금수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행기관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수납기관의 결정과 수수료를 과세권자가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납세자가 부담할 것인가에 수수료부담자의 결정이다.

이에 대해서 첫째,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납부로 인하여 수수료부담을 많이 느끼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다른 대행기관을 이용한 후 나중에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수수료는 납세자에게 일부 부담시킨 후 점차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

2. 해결과제

신용카드제도를 가맹점방식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해결과제들이 있다.

가. 수납기관의 결정

우리 나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되고 또한 수수료율의 산정에서 신용카드회사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대행회사를 두어 이들의 책임하에 세금을 받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행회사는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외부대행회사로 신용카드회사가 직접 맡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회사 이외에 신용카드회사와 협력된 가칭 결제전담회사에 의해 대행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전제가 되는 것은 수수료를 어떠한 형태이든 일정비율만큼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행회사를 이용하게 되면,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외부대행회사를 이용함으로써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로 인한 논쟁을 줄이면서, 차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차선택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과세권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수수료부담의 결정

수수료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

거는 앞에서 검토한 바 있다. 수수료부담은 초기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과세권자의 부담으로 될 수 밖에 없도록 진행되어 갈 것으로 본다. 세금이라고 해서 일반의 상거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제수단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신용카드의 확대가 진행될 수록 일반 국민도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수료는 과세권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카드론에 의한 세금납부의 경우 납세자의 높은 이자부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수납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지 않고 외부의 대행회사에 위탁함으로써 수수료징수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불만을 줄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 법률적 보완

1) 지방세 납부일의 조정

지방세의 소멸은 추상적 소멸과 구체적 소멸로 구분된다. 이 경우 지방세의 납부는 지방세를 구체적으로 소멸하는 통상의 방법이다. 지방세의 납부방법은 현금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금납부와 동시에 지방세는 소멸한다. 그러나 지방세를 신용카드에 의해 가맹점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을 받은 날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미국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승인일 기준을 지방세의 납부일로 하고 있다.

2) 징수비의 현실화

우리 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를 3% 등 일정비율로 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 신용사회에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납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세정을 해야 하지만, 지불수단이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수수료율의 조정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회사들은 보통 가맹점에 대하여 2%내지 3%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가맹수수료율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신용카드가맹수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신용카드회사의 입장에서 세금납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인 과세권자 등에게 수수료율을 낮추는 등 특례를 줄 필요가 있다.

4) 자금결제목적의 신용카드사용허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물품 혹은 용역거래에서 결제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세금납부와 같이 자금결제만을 위한 목적에

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3월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 동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신용카드의 정의로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信用卡加盟店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證券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세금징수수수료의 납세자부담허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하여 세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거나 세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6) 납부취소 및 정정의 허용

신용카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소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납기 이전에는 얼마든지 취소 내지 정정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 및 환급의 절차로 인하여 추가적인 행정력 및 징수비가 증가할 수 있다.

7) 가산세에 관한 특례

신용카드로 납기전에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됨으로서 일부 납세자는 고의로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신용카드납부를 선호할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카드로방식에 의해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규정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납세자개인정보의 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에서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 카드 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2002년 3월 30일 법률개정에서 신설하였다. 이는 만약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용정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넘겨지는 등 납세자개인정보의 누출이 우려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인터넷시대에서 신용거래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신용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를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오히려 장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세금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과세권자는 수수료부담 등의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결국 신용카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미국 등에서는 신용카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세 이외 지방세의 경우 아직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적다. 하지만 인터넷시대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에 대해 납세자의 요구는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수수료납부에 대한 관심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에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수수료라는 것은 일종의 징수비에 속한다는 점에서 과세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반드시 꺼려할 점은 아니라고 본다. 세금납부는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유추구를 하는 일반상거래와는 다르므로 수수료를 조세로 매꾸는 것은 조세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금으로 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징수준의 징수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조

세에서 충당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과세권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원리에 어긋난다고 결론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중국적으로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정부주도하에서 신용사회를 앞당길 수 있으며, 세금을 좀 더 원활하게 수납함으로써 납기를 놓치거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과세권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수료부담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수수료부담이 세수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초기단계에서는 수수료 중 일부분만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점차 과세권자의 부담으로 점진적 추진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고 외부의 대행회사에 위탁하는 방법도 좋다고 본다.

일반상거래에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서 세금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국가기관이 세금을 징수하면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받는다 해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한다면 납세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납부에 있어서 신용카드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미국국세청, <http://www.irs.gov/efile/display/0,,i1%3D51%26genericId%3D10079,00.html#Credit> 2002.7
2. 미국국세청, http://www.irs.gov/elec_svs/partners.html 2002.7
3. 행정자치부제공 자료, 2002.7

